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목적

-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,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.

2.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1)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이며 향후 등급갱신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- 2) 이용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.

3. 월 이용료

- 1) 본 기관의 서비스 발생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- 2)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『노인장기요양법』에 따라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의 경우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%,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%, 6%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.

구 분	본인부담비율	내 역
본인부담금	15%	일반 수급자
	9%	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,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
	6%	
	0%	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

※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3) 2026년 재가 장기요양기관 월한도액

① 월 본인부담금 한도액(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)

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한도액(원)	2,5123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

-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월 중에 최초 인정 및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말일까지 월 한도액(1개월)을 적용한다.

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장기요양수가

제공시간	30분이상	60분이상	90분이상	120분이상	150분이상	180분이상	210분이상	240분이상
수가	17,450	25,320	34,120	43,430	50,640	57,020	63,530	70,080

① 급여제공시간 중 22:00부터 익일 06:00까지의 서비스 제공은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한다.

※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(이하“일요일”이라 한다)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%를 가산한다.

※ 「근로기준법」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(이하“유급휴일”이라 한다)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(이하 “근로자의 날”이라 한다)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%를 가산한다. 다만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.

※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,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

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,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. (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)

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장기요양수가

분 류	금액(원)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8,99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80,230
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50,100

4.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1.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급여수가 100% 전부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2.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(이) 전액 부담한다.
3. 가족휴가제 사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본인부담금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이 전액 부담한다.

5.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.

1) 서비스제공자 의무

-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
※ 단, 병원 입원 시는 간호·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, 신원인수인 및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
- ③ 표준 계약서에 따른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
- ④ 수급자의 안전관리 및 감염관리 의무
- ⑤ 수급자의 개인정보 및 건강관리 질환 정보 누설 금지
※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 및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
- ⑥ 이용 상담,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
- ⑦ 인권교육, 노인학대 예방교육,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준수

2) 신원인수인의 권리(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)

- ①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-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
-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 권리

3) 신원인수인의 의무(보호자 또는 동거인, 보증인)

-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
-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 이용
※ 수급자 만을 위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. 그 외 제외
-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-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
※ 수급자 상태, 건강문제 및 요양 필요 정보 등은 모두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,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의 변화로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야 한다.
-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,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.

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

- 1)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- 2)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. (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. 단, 담당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적절하지 못한 서비스라 판단 될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.)
- 3)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, 파손,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4) 신원인수인은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점검 하며 인수인계에 따라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.

6. 계약해지 요건 및 해지

1. 계약해지 요건

-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-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
- ③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④ 기관은 제14조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2. 계약의 해지

- ①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)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- 2)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 - 3)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: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.
 - 4)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- 5)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- 6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
 - 7)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 - 8) 3회 이상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납부하지 않고, 연체하였을 때

- 만덕노인재가복지센터 -